

개성공단에서의 남북상사중재위원회 구성·운영에 관한 연구

A Study on the Organization and Operation of the Inter-Korean Commercial Arbitration Committee in Gaeseong Complex

김 광 수*
Kwang-Soo Kim*

<목 차>

- I. 서 론
 - II. 개성공단 교역 현황과 분쟁의 유형
 - III. 분쟁해결절차 및 상사중재운영위원회 운영에 관한 합의
 - IV. 개성공단 상사중재위원회 운영을 위한 후속조치와 실천과제
 - V. 결 론
- 참고문헌
Abstract

주제어 : 남북상사중재위원회, 개성공단 상사중재위원회, 중재인명부, 중재규정

* 숭실대학교 경제통상대학 글로벌통상학과 교수

I. 서 론

남북 간 경제협력과 교역은 1988년 11월 14일 북한 교역물품의 최초 반입(대우, 도자기 519점), 2000년 8월 22일 현대와 북한의 아태평화위원회와 개성공단 개발합의, 2004년 12월 15일 개성공단 첫 제품생산을 했다. 그러나 2008년 금강산 관광객 박왕자 씨 피격 사망으로 금강산 관광 중단, 2010년 3월 천안함 사태이후 5.24 조치 시행, 2013년 4월 28일 우리 정부의 개성공단 남측 인원 전원 철수 결정으로 한 때 남북경협은 암흑기를 겪게 되었다.¹⁾

그러나 2013년 4월 3일 발생한 개성공단 사태는 5개월 여 만에 정상화 되었다. 그리고 2013년 9월 11일 남북 양측은 개성공단 국제화 문제, 공동위원회를 지원할 사무처 운영 및 분쟁 발생 시 이를 해결할 개성공단에서의 ‘남북상사중재위원회 합의서 이행을 위한 부속합의서’에 서명하고 2003년부터 발효되었다. 이에 따라 개성공단에서의 상사분쟁과 투자분쟁은 남북상사중재위원회가 가동되기 이전까지 개성공단 상사중재위원회가 해결토록 되어 있다.

한편 2014년 3월 26일 박근혜 대통령은 독일 드레스덴에서 한반도 평화통일을 위한 구상과 관련하여 북한 당국 측에 ① 이산가족 상봉의 정례화 등 남북한 주민들의 인도적 문제 해결, ② 한국의 자본·기술과 북한의 자원·노동이 유기적으로 결합된 한반도 경제공동체 건설에 기여할 수 있는 남북한 공동번영을 위한 민생 인프라의 구축, ③ 언어와 문화 등 동질성 회복과 가치관과 사고방식의 차이 해소와 함께 남북교류협력사무소 설치를 북측에 제안하였다.²⁾

개성공단은 남북 간 정치적인 대치국면과 별개로, 경제교류의 상징성과 창구역할 때문에 남북이 쉽게 포기할 수 없는 지역으로서 남북 평화통일을 위한 한반도 경제공동체 건설의 시험장이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점에서 남북이 개성공단에서의 상사분쟁해결기구를 설치하지고 합의한 것은 상당한 의미가 있다고 하겠다.

남북은 이미 ‘남북상사분쟁해결절차에 관한 합의서’(이하 ‘분쟁해결절차 합의서’라고 함)와 ‘남북상사중재위원회 구성·운영에 관한 합의서’(이하 ‘남북상사중재위원회 합의서’라고 함)를 발효시킨 바 있다. 우리 측은 2007년 통일부와 대한상사중재원간 남북상사중재위원회 중재사무처리 업무위탁협약의 체결(2007.4.16.)을 통해 남측상사중재사무처리기관을 지정하고 공동중재규정 초안을 마련하는 등 합의서 후속조치에 만전을 기했으나 북측의 무

1) 매일경제, 2013. 5. 14. A19면

2) 조선일보, 2014. 3. 29. A29면

관심과 비협조로 그 후속조치가 중단된 상태에 있다.³⁾ 이러한 상태에서 ‘개성공단에서의 남북상사중재위원회 구성·운영에 관한 합의서 이행을 위한 부속합의서’를 채택한 것은 그 실효성에 다소 의문이 있을 수 있다.

최근 국내외 중재제도는 많은 변화를 겪고 있다. 2013년 5월 17일 서울국제중재센터가 설립되고 대한상사중재원도 국제중재유치를 위해 규칙의 개정과 인프라 개선 등을 밝힌 바 있다. 한편 유엔도 유엔국제무역법위원회(UNCITRAL)의 표준중재법(2006)과 UNCITRAL 중재규칙(2010)을 개정했으며 북한은 2008년 7월 21일 2008. 7. 21. 대외경제중재법을 개정하였다. 우리 측에서도 이러한 시대적 변화에 호응하기 위해서 법무부에서 현재 중재법 개정작업을 추진하고 있다. 이러한 중요한 시기에 남북상사중재가 정상적으로 가동되기 전에 우선 개성공단에서의 상사중재제도를 정립하는 것은 남북 교역과 경험의 증진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이다.

개성공단에서의 상사분쟁의 해결 또는 남북상사중재에 관한 선행연구는 2000년 초에서 2007년까지 다수 있었다. 그 후 남북관계의 경색으로 인하여 이에 관한 연구가 많지 않은 실정이다. 그것도 기존의 남북상사중재에 관한 합의서를 토대로 주로 연구를 했다. 앞으로는 개성공단 관련 부속합의서가 체결된 이상 남북상사중재가 가동되기 전까지 개성공단에서의 분쟁해결에 관한 연구는 물론 기존의 합의서 후속조치에 관한 연구도 병행되어야 할 것이다.

본고에서는 개성공단에서의 남북상사중재위원회에 관한 합의사항을 분석하고 개성공단 부속합의서와 동 합의서가 준용하고 있는 기존의 분쟁해결절차합의서 및 남북상사중재위원회 합의서와의 정합성 문제, 법무부가 마련한 중재규정의 초안 분석 및 평가, 중재사무 처리기관의 지정 및 중재인 명부작성 등에 관한 실천과제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II. 개성공단 교역 현황과 분쟁의 유형

1. 남북교역 및 개성공단 교역 현황

2013년 남북교역은 12억 달러로 전년대비 42% 감소했다. 반면 북중무역은 전년대비 10% 증가한 65억 달러를 기록했다. 이에 따라 2012년 다소 줄어들었던 북중무역과 남북교역의 격차가 급격히 확대되어 남북교역은 북중무역의 18% 수준으로 급락했다. 북한의 핵실험 이후 대북통관규제 강화에도 불구하고 북한의 대중수출은 전년대비 17% 넘게 증가하였으나 개성공단교역 중심인 남북교역은 개성공단 일시 가동중단으로 반출과 반입이 모두 전년대비 40% 이상 급감하면서 격차가 두드러졌다.⁴⁾

3) 김광수, “남북상사중재 제도 활성화를 위한 남북협력방안”, 중재연구 제21권, 한국중재학회, p.260.

< 최근 3년 남북교역 동향 >

(단위: 천 달러, %)

구 분		2011년	2012년	2013년
일반교역	반출	0 (△100)	0 (△)	0 (△)
	반입	226 (△99.7)	843 (273.0)	589 (△30.1)
	소계	226 (△99.8)	843 (273.0)	589 (△30.1)
위탁가공	반출	0 (△100)	0 (△)	0 (△)
	반입	3,704 (△98.3)	0 (△100)	0 (△)
	소계	3,704 (△98.8)	0 (△100)	0 (△)
개성공단	반출	788,698 (6.9)	888,086 (12.6)	517,524 (△41.7)
	반입	908,935 (28.8)	1,073,109 (18.1)	614,649 (42.7)
	소계	1,697,633 (17.6)	1,961,195 (15.5)	1,132,173 (△42.3)
기 타 (인도적 지원 등)	반출	11,494 (△60.9)	9,064 (△14.8)	3,079 (14.8)
	반입	798 (△82.5)	0 (△100)	4 (△100.0)
	소계	12,292 (63.8)	9,064 (△26.3)	3,083 (△66.0)
총 계	반출	800,192 (△7.8)	902,117 (12.7)	520,603 (△42.0)
	반입	913,663 (12.5)	1,074,091 (17.6)	615,242 (△42.7)
	소계	1,713,855 (△10.4)	1,976,208 (15.3)	1,135,845 (△42.5)
	수지	△113,471	△171,974	△94,639

주: ()내는 전년대비 증가율

자료: 한국무역협회(kita.net), 무역통계, 남북교역; 통일부, 거래유형별 남북교역현황

개성공단교역은 5.24조치의 신규투자 불허 등 어려운 여건에서도 지난 수년 큰 폭의 증가세를 유지했으나, 지난해 4월의 개성공단 가동 잠정 중단 조치와 후유증으로 2013년에는 전년대비 42.3% 감소한 11억3천만 달러를 기록하였다. 2010년 3억 달러를 상회하던 위탁가공교역은 5.24조치 영향으로 2011년에 3백7십만 달러로 감소한 후, 2012년부터 완전히 자취를 감추었다.⁴⁾ 그리고 2010년 1억 달러를 넘었던 일반교역도 5.24 조치 이후 거의 실종인 상태이다.

이렇듯 남북의 정치적인 경색으로 한 동안 증가세를 유지해 온 남북교역은 감소세를 유지한 반면 중국의 대북무역은 가파른 증가세를 나타내고 있다. 중국에 대한 북한의 경제의존도가 심화되어 가고 있다는 것이다. 이 부분은 통일 후에도 큰 영향을 줄 수 있다. 따라서 개성공단부터 점차적으로 정상화 가동하여 교역액을 늘려 북한의 대중의존도를 낮추도록 해야 한다. 이를 위한 한 방법으로 개성공단에서의 공정하고 투명한 분쟁 해결절차를 제정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4) 한국무역협회, 앞의 보고서

5) 한국무역협회, 2013년 남북교역·북중무역 동향 비교보고서

2. 남북교역 분쟁 유형 및 계약서상의 분쟁 관련조항

한국무역협회(2010), 대한상사중재원(2010) 등의 설문조사에 따르면 분쟁 관련 유형은 건축 계약, 임대차 계약 등의 분쟁이 있었고, 애로사항으로는 클레임 해결 수단의 부재를 들었다.

또한 최근 2014년 4월 3일 개성공업기업협회가 조사한 설문결과에 따르면 입주업체는 81% 공장가동을 하고 있으며, 입주기업체의 애로사항으로 부족한 복 측 근로자(41%), 임금, 세금, 보험에 관한 북한 측의 일방적인 요구(19%), 그리고 경협 보험금 반납 문제를 들었다. 정상화 예상시점은 금년 12월 경이라고 응답했으며, 개선되어야 할 사항으로 인력문제 해결을 위한 인프라 건설, 3통문제의 해결과 노무환경 개선을 들었다.⁶⁾

이러한 설문조사 결과에서 나타났듯이 개성공단에서의 상사분쟁의 유형은 상거래분쟁과 함께 노사분쟁 세금과 같은 행정적인 분쟁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그에 대한 분쟁해결의 수단이 없는 것이 큰 애로사항으로 드러났다. 따라서 합의서 해석과 관련하여 노사문제와 행정사건이 중재의 대상으로 해석할 수 있는지에 대한 부분과 분쟁해결기구를 조속히 설치하는 것이 개성공단 입주기업에 대한 교역과 경협의 중요한 지원책이 될 수 있을 것이다.

한편 남북기업간의 경제거래와 관련하여 사용되는 임가공계약서, 의향서, 합의서 등의 계약서상의 분쟁해결 조항은 분쟁조항이 없는 경우도 있으나 분쟁조항으로 당사자 간의 협의, 조정 및 중재 등으로 해결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

남북 기업체가 개성공단 등의 분쟁을 남북상사중재위원회의 상사중재를 이용하려면 관련 계약서에 중재합의를 설정해야 한다.⁷⁾ 예를 들어 피고지 방식에 의한 중재합의로써 “이 계약으로부터 발생하는 모든 분쟁은 「분쟁해결합의서」 및 「남북상사중재위원회 합의서」와 「개성공단 부속합의서」에 따라 개성공단중재위원회의 중재로 최종 해결한다. 신청인이 남측기업일 경우 평양에서 중재절차를 진행하고, 신청인이 북측기업일 경우, 서울에서 중재로 최종 해결한다”라는 내용을 들 수 있다. 남북 간의 계약서상의 분쟁조항의 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6) 조봉현, “남북 경제교류와 통일”, 숭실평화통일연구원 개원 기념학술회의, 숭실대학교, 2014, p.72.

7) 남북상사중재는 일반국제상사중재와 같이 중재합의를 전제조건으로 한다. 그러나 투자중재는 중재합의가 없어도 합의서상의 강행 조항으로 중재절차 진행이 가능하다.

<남북교역 관련 계약서상의 분쟁조항>⁸⁾

계약서 / 법규	주요 특징	비고
의향서 / 협의서	국제법상 관례 → 쌍방 간에 해결	
합영계약	이사회의 협의로 해결 → 중재	제네바 중재기관
일반무역 / 입가공	당사자간의 협의로 해결	
대외경제계약법 / 외국인투자관련법	우호적 해결원칙 → 북한 중재기관의 조정	한국의 알선

Ⅲ. 분쟁해결절차 및 상사중재운영위원회 운영에 관한 합의

1. 남북한 상사분쟁 해결의 기본원칙

(1) 기본적인 법적 해결장치

남북한은 남북한 상사분쟁을 해결하기 위하여 ‘분쟁해결절차합의서’와 ‘남북상사중재위원회 합의서’를 체결하였다. 남북한은 남북한 경협과정에서 발생하는 상사분쟁에 대하여는 제1차적으로는 당사자의 협의의 방법으로 제2차적으로는 중재와 조정의 방법으로 해결하는 기본원칙을 규정하고 있다.

개성공단이 재가동함에 따라 남북한 투자보장 등 경제협력을 위한 제도정비와 함께 공정하고 상호 신뢰할 수 있는 상사분쟁 해결방안을 마련할 것이 절실히 요구된다. 개성공단에서의 상사중재위원회가 정상적으로 가동되기 위해서는 기존의 합의서가 남북특수관계론에 입각하여 재조명되어야 할 것이다.

(2) 당사자자치 원칙에 의한 해결⁹⁾

중재제도는 국제적으로 널리 통용되는 소송이외의 해결수단으로서 기본적으로 당사자자치를 기초로 일정한 절차를 준수하도록 의무화하여 절차적 정의를 구현하도록 하고, 국가에 의한 집행을 보장하는 시스템을 갖추고 있다. 중재에 있어서 당사자자치의 원칙은 중재합의의 여부, 중재판정에 적용될 절차법과 실체법의 선택에서만 허용된다는 내적한계와 중재절차에 있어서 중재지의 절차법 또는 당사자가 합의한 중재절차 모국법의 강행규정과

8) 김광수, “남북상사중재 제도의 정착방안에 관한 연구”, 중앙대학교 무역학과 박사학위논문, 2007, p.76.

9) 일정한 절차는 중재합의, 중재신청, 중재심리 참가 등을 의미한다. 그리고 중재판정에 적용될 절차법 및 실체법도 당사자가 지정할 수 있다. 만약에 당사자가 정하지 않는다면 중재판정부가 합의서에 따라 결정하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 비록 합의서에서 조정 또는 중재를 통하여 남북간 상사중재를 해결하도록 하고 있으나, 그 이전에 당사자가 자체적으로 화해를 통해 해결하면 더욱 좋을 것이다.

실체법상 공서양속 등 강행규정을 위반할 수 없다는 외적 한계를 가지고 있다. 남북한 상사중재제도를 성공적으로 정착시키기 위해서는 관련 합의서에 따라 당사자자치원칙이 준수되어야 할 것이다.

(3) 남북한특수관계론에 입각한 제3의 분쟁해결시스템¹⁰⁾

남북상사제도는 남북한 경험과정에서 발생하는 상사분쟁에 대하여 남북한 일방의 재판제도나 기존의 국제상사중재 등 제도를 이용하는 것이 아니라 남북한이 합의하여 남북한 공동기구로서 남북상사중재위원회를 구성하여 상사분쟁을 해결하는 제3의 분쟁해결시스템을 도출한 것이다.

남북한간 경제교역은 민족내부거래성을 가지고 있으나 남북한특수관계론 시각에서 남북한이 각각 사실상 독립된 경제 및 영역을 가지고 국제사회에서 활동하고 있는 현실을 고려하여 남북한간에도 일정한 영역에서는 국가 간 무역을 규율하는 규범을 적용할 필요성도 있을 것이다. 중재와 관련해서는 뉴욕협약, 워싱턴협약, ‘UNCITRAL 중재규칙 및 표준중재법’등 국제적으로 널리 통용되는 국제적 중재제도의 주요내용이 준용되어 국제중재제도에 통용될 수 있는 기준을 바탕으로 국제적인 해결절차를 마련하여야 할 것이다.

2. 분쟁해결절차를 위한 합의서¹¹⁾

현실적으로 남북한 경제협력에 있어서 중재절차의 적정성과 공정성을 담보할 기구로서는 남북한의 재판기구 또는 중재기관, 제3국의 상설중재기관이나 국제기구도 고려할 수 있다. 그러나 남북한 당국이 합의한 남북상사중재위원회에 남북한재판기관이 중재절차에서 담당하고 있는 권한을 부여하여 일정한 경우에 중재절차에 개입하고 중재판정에 대한 사후심사를 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다만, 현재의 남북한 관계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남북상사중재위원회에 준(準)사법·입법·행정기관의 성격이 인정 되었다.

(1) 중재에 의한 해결의 법제도적 근거

2000년 12월 16일 남북한이 체결한 ‘분쟁해결절차합의서’는 2003년 8월 20일 발효되었는데, 남북경협에 있어서 발생하는 상사분쟁에 대하여 상당히 체계적인 분쟁해결절차를 규정하고 있다. 위 합의서는 “남북의 경제교류와 협력이 나라와 나라 사이가 아닌 민족내부의 거래임을 확인”하고 있으며, 상사분쟁 해결의 원칙으로서 제1차적으로 당사자의 협

10) 국제상사중재는 중재판정의 취소 등이 해당 국가의 법원에서 진속 관할권이 있으나, 남북상사중재에 있어서는 남북상사중재위원회가 그 기능을 갖고 있기 때문에 제 3의 분쟁해결시스템이라고 칭한다. 특히, 남북상사중재 합의서상의 중재는 한국중재법 및 유엔 표준중재법 등의 내용과는 상당한 차이점을 보이고 있다.

11) 분쟁해결절차 합의서 제3조

의에 의하여 해결하고, 협의의 방법으로 해결되지 않을 경우에는 중재의 방법으로 해결하는 것을 원칙으로 제시하고 있다.¹²⁾ 개성공업지구법과 개성공업지구 보험규정에서도 남북상사중재의 법적근거를 찾아볼 수 있다.¹³⁾

(2) 남북상사중재위원회의 기능 및 구성

남북상사중재위원회는 남북 각각 위원장 1명과 위원 4명으로 구성한다.¹⁴⁾ 그 관할사항으로서 남북경협 과정에서 발생한 상사분쟁 가운데 당사자가 중재위원회에 제기하여 해결할 것을 서면으로 합의한 분쟁사건과 투자보장합의서 제7조 제1항에서 규정하는 일방 당사자와 상대방 투자자 사이에 발생하는 분쟁으로 한다.¹⁵⁾ 여기에서 주목해야 할 것은 중재위원회의 기능에 ‘이 밖에 쌍방의 합의에 의하여 부여되는 기능’이 포함되어있다는 것이다. 이는 남북 당국 간 합의를 통하여 상사분쟁과 투자분쟁이외의 개성공단에서 현재 발생하고 있는 노동, 세금 등의 분쟁도 해결할 수 있다고 본다.¹⁶⁾ 중재위원회는 본질적인 기능 이외에 중재 또는 조정 및 그와 관련한 사무처리, 중재규정과 그 관련규정의 제정 및 수정·보충, 중재인의 선정, 이 밖에 쌍방의 합의에 의하여 부여되는 기능을 규정하고 있다. 중재위원회의 의사결정은 쌍방의 합의에 의하도록 하였다.¹⁷⁾

(3) 중재판정부

중재인은 중재위원회에서 법률 및 국제무역투자실무에 정통한 자 가운데 30명씩 선정한다. ¹⁸⁾ 중재판정부는 당사자 합의에 따라 선정되는 중재인 3명으로 구성하되 정해진 기간 안에 중재인의 선정에 대하여 합의를 하지 못할 경우에는 중재인 명부에서 각각 1명의 중재인을 선정하며 선정된 2명의 중재인이 협의하여 중재인 명부에서 의장중재인 1명을 선정한다. 의장중재인을 선정하지 못할 경우에는 쌍방의 의장중재인이 협의에 의한 선정 또는 국제투자분쟁해결센터에 의해 선정될 수 있다.

(4) 중재판정

중재판정의 준거법은 당사자가 합의한 법령에 따르고, 당사자가 합의한 법령이 없을 경우에는 남한 또는 북한의 관련법령, 국제법의 일반 원칙, 국제무역거래 관습에 따른다.¹⁹⁾

12) 분쟁해결절차 합의서 제1조

13) 개성공업지구법 제46조 및 개성공업지구 보험규정 제27조

14) 분쟁해결절차 합의서 제2조

15) 분쟁해결절차 합의서 제3조 및 제8조

16) 원래 노동, 행정 분쟁은 상사중재의 대상이 아니다. 그러나 개성공단에서 발생하고 있는 분쟁의 성격은 대다수가 노사 및 행정 분쟁인 점을 고려하여 남북한 당국이 합의를 통하여 중재의 대상으로 할 수 있다고 규정한 것으로 추정된다.

17) 분쟁해결절차 합의서 제4조

18) 분쟁해결절차 합의서 제5 및 제6조

중재판정은 중재판정부에서 중재인 과반수의 찬성으로 결정한다.²⁰⁾ 그리고 당사자들의 동의 없이는 공개하지 않는 비공개주의를 취하고 있다.²¹⁾ 판정은 중재신청이 접수된 날로부터 6개월 이내에 하되 필요한 경우 당사자들과 협의하여 그 기간을 3개월까지 연장할 수 있다²²⁾(제14조). 그리고 남북한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중재판정을 구속력이 있는 것으로 승인하고 해당 지역 재판기관의 확정판결과 동일하게 집행하도록 하였다.⁽²³⁾ 제일 주목할 것은 중재판정의 구속력의 예외사유인 ‘특별한 사정’에 대하여 중재위원회가 결정하도록 하고 있어 법적 안정성을 저해하는 요소가 될 수 있다.

(5) 조정에 관한 해결

중재신청이 접수된 후 당사자 쌍방으로부터 조정의 요청이 있을 경우에는 중재위원회는 중재절차를 중지하고 조정절차를 개시한다. 당사자가 선정한 1명 또는 3명의 조정인에 의해 조정이 성립한 경우 조정의 결과는 중재판정과 동일한 효력을 가진다. 조정인이 선정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조정이 성립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조정절차는 종료되고 중재절차가 다시 진행된다.²⁴⁾(제17조).

3. 남북상사중재위원회 운영을 위한 합의서

(1) 위원회 운영의 법·제도적 근거

2003년 10월 12일 남북상사중재위원회 합의서가 분쟁해결절차합의서를 이행하기 위한 후속합의서로서 2005년 8월 5일 발효되었다. 남북상사중재위원회는 위 합의서가 발효된 날부터 6개월 내에 구성하도록 하고, 위원회는 중재규정에 대한 쌍방의 초안을 교환하도록 규정하였다.²⁵⁾

(2) 남북상사중재위원회의 법적 지위와 기능

남북상사중재위원회에 대하여 각각 남북한에서 독자적인 법인으로서의 능력을 부여하고 업무수행에 필요한 범위 안에서 계약의 체결, 재산의 취득 및 처분, 소송제기의 능력을 부여하여 법적 지위를 명확히 하였다²⁶⁾(제1조).

19) 분쟁해결절차 합의서 제12조

20) 분쟁해결절차 합의서 제13조

21) 분쟁해결절차 합의서 제15조

22) 분쟁해결절차 합의서 제14조

23) 분쟁해결절차 합의서 제16조

24) 분쟁해결절차 합의서 제17조

25) 남북상사중재위원회 합의서 제14조

26) 남북상사중재위원회 합의서 제1조

중재위원회의 기능에 중재인·감정인에 대한 기피신청, 중재인 권한의 존재여부에 대한 이의신청, 중재판정부의 권한범위에 대한 이의신청, 중재판정의 취소신청 등에 대한 결정권을 부여하고 중재인을 등록하고 확정을 해야 하고 아울러 남북상사중재에 관한 정책도 수립해야 한다.²⁷⁾

중재위원회는 남북한이 각각 정한 위원장 1명과 위원 4명을 구성되며, 쌍방 위원장이 위원회를 공동으로 대표하고, 위원장과 위원의 임기는 4년으로 연속하여 재임할 수 있도록 하였다. 쌍방 위원장은 필요한 수의 보좌인원과 서기 1명을 지정할 수 있도록 하였다.²⁸⁾

남북상사중재위원회의 기능과 역할에 비추어 남북상사중재제도의 성공적인 운영을 위해서는 남북상사중재위원회와 중재인단의 구성 및 중재규정의 내용이 결정적으로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위원장과 위원은 법률 및 국제무역투자 실무에 정통한 자, 기타 필요한 분야의 전문지식이 있는 자가 지명되도록 규정되어.²⁹⁾ 이와 관련하여 남측은 법무부, 산업자원부, 통일부, 대한상사중재원 및 한국중재학회 인사 위주로, 북한은 민경협 인사 위주로 각각 구성된 적이 있으나 공식적인 회의는 개최된 바 없다.

(3) 중재판정의 취소 및 재심결정

합의서에는 중재판정에 대한 취소절차와 남북한의 재판기관이 위원회의 결정에 대하여 다시 심사할 수 없도록 하였다.³⁰⁾

(4) 중재사무처리기관의 지정

남과 북의 위원회는 중재 관련 서류 보관과 문서보관소 관리 등을 위해 중재사무처리기관을 지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2007년 통일부와 대한상사중재원 간 업무협약이 체결되어 대한상사중재원이 중재사무처리기관으로 지정되었으나, 북측에서는 지정을 하지 않았다.

(5) 중재규정

남북합의서에서 정한 기본원칙에 따라 제정되는 중재규정도 상사분쟁사건의 중재신청, 중재판정부의 구성, 심리절차, 판정, 불복, 중재판정의 이행과 집행 등에 대하여 국제적으로 보편타당한 표준적인 중재규정이 되어야 할 것이다. 합의서 후속조치 중 가장 중요한 중재규정의 초안 작성과 상호교환은 이루어지지 않았다. 남측에서는 법무부에서 만든 안과 통일부에서 작성한 안이 공존했지만 후속조치가 단절되어 남측에서도 공식적인 규정(안)이 없는 실정이다.

27) 남북상사중재위원회 합의서 제3조

28) 남북상사중재위원회 합의서 제2조

29) 분쟁해결절차에 관한 합의서에는 자격에 관한 규정이 없다.

30) 남북상사중재위원회 합의서 제3조 및 제4조

4. 개성공단중재위원회 운영을 위한 합의

2013년 9월 11일 개성공단 남북공동위원회 남측 위원장 김기웅과 개성공업지구 북남공동위원회 북측 위원장 박철수는 남과 북은 「남북상사중재위원회 구성·운영에 관한 합의서」에 따른 남북상사중재위원회가 가동되기 이전까지 개성공단과 관련한 상사분쟁을 신속, 공정하게 해결하기 위하여 개성공단 상사중재위원회(이하 “개성공단중재위원회”라 한다)를 다음과 같이 구성·운영하기로 하였다. 31)

(1) 합의내용

1) 위원회의 법인 능력

위원회는 개성공단 내에서 발생하는 상사분쟁을 해결하기 위한 기구이다. 위원회는 남과 북에서 독자적인 법인으로서의 능력을 가진다. 32)

2) 위원회 구성 방법

위원회는 남북 각각 위원장 1인, 위원 4명으로 구성하며, 필요한 경우 쌍방이 합의하여 조정할 수 있다. 위원장과 위원은 법률 및 국제무역투자 실무와 개성공단 및 기타 필요한 분야의 전문지식이 있는 자로 한다. 33)

3) 사무처의 역할

위원회 활동에 필요한 연락 및 지원업무 등은 개성공단 남북공동위원회 사무처가 담당한다. 34)

4) 기존 합의서 준용

본 합의서에 규정되지 않은 사항 중 투자자산 보호와 관련한 부분은 「남북사이의 투자보장에 관한 합의서」, 상사분쟁 해결절차와 관련한 부분은 「남북 사이의 상사분쟁 해결절차에 관한 합의서」, 상사중재위원회와 관련한 부분은 「남북상사중재위원회 구성·운영에 관한 합의서」를 준용한다.

5) 중재규정제정

남과 북은 이 합의서의 발효된 날부터 3개월 내에 위원회를 구성하며, 6개월 내에 중재

31) 분쟁해결절차합의서 제19조 및 남북상사중재위원회 합의서 제14조 준용

32) 남북상사중재위원회 합의서 제1조 준용

33) 분쟁해결절차합의서 제2조 및 남북상사중재위원회 합의서 제2조 준용

34) 이 사항은 위 두합의서 상의 보좌인원, 중재사무처리기관과 다른 별도의 조직이다.

인 명부를 교환하고, 당사자들의 투자 및 경제활동이 투명하고 공정하게 이루어지도록 중재규정을 마련한다. 35)

6) 수정·보충 및 효력발생

이 합의서는 쌍방이 합의하여 수정·보충할 수 있다. 이 합의서는 쌍방 공동위원회 위원장이 서명한 후 각기 발효에 필요한 절차를 거쳐 그 문본을 교환한 날부터 효력을 발생한다.36)

(2) 분쟁해결절차합의와 상사중재위원회 합의서와의 상관관계

1) 문제점과 시사점

남북상사중재의 법적근거인 분쟁해결절차합의서 및 남북상사중재위원회 합의서 후속조치가 없이 개성공단에서의 중재위원회 운영을 위한 부속합의서가 체결된 것은 한시적인 조치라 볼 수 있다. 북한은 중국의 三胞와 달리 朝朝(북한과 조총련) 투자가 미흡하다.37) 그러나 북측의 이러한 계약과 관련된 분쟁과 중국과 북한 기업 간의 분쟁 유형을 연구하면 향후 개성공단에서의 중재규정의 제정 시 참고할 수 있을 것이다.

2) 후속조치

결국 개성공단에서의 중재제도가 정착되기 위해서는 부속합의상의 후속조치, 즉 중재위원회 구성, 중재사무처리기관의 지정, 중재인명부 확정, 중재규정의 제정이 조속히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 중재사무처리기관을 조속히 지정하고, 사무처리기관과 사무처와의 업무분장 등이 조속히 마련되어야 하라 것이다. 북한에서의 분쟁해결은 협의와 조정을 중시하는 것을 알 수 있다.38) 따라서 조정과 중재가 정착되기 이전 실질적인 해결을 위해 알선제도의 도입을 신중히 검토할 필요가 있다.

IV. 개성공단 상사중재위원회 운영을 위한 후속조치와 실천과제39)

개성공단 기업은 금년 말 정도 경영이 정상화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정상화 되면 결국 반출반입을 포함한 경협이 활성화 될 것이며, 이로 인한 분쟁 또한 발생할 것으로

35) 남북상사중재위원회 합의서 14조 준용

36) 분쟁해결절차합의서 제19조 및 남북상사중재위원회 합의서 제14조 준용

37) 박정동, 중국과 북한의 비교 개발경제론, 서울대학교출판부, 2008, p.230.

38) 권재열 외, 북한의 법체계, 집문당, 2003, p.370.

39) 김광수, “남북상사중재 제도의 정착방안에 관한 연구”, 중앙대학교 무역학과 박사학위논문(2007) 참조(‘앞의 글1’이라 함)

예견된다. 따라서 분쟁해결에 대한 대비책이 요구되는 시점이다. 이러한 점을 감안하여 남북 양측은 개성공단에서의 상사분쟁해결을 위한 합의를 한 바 있다. 개성공단에 대한 투자는 일반적으로 통용되는 기업논리에 의해서라기보다는 정치적인 논리, 즉 경제적 교류·인적 교류를 통한 남북대화 재개 및 화해무드 조성이라는 차원에서 이루어졌기 때문에, 지금까지 개성공단에서의 상사분쟁, 투자 및 노사분쟁은 정치적인 접근방식으로 해결되어 왔지만 앞으로는 법·제도적인 차원에서 해결되어야 할 것이다.

1. 후속조치 관련 과제

개성공단 중재위원회가 가동되기 위해서는 그 후속조치가 잘 취해져야 할 서이다. 후속조치로는 법인격 있는 위원회의 설립⁴⁰⁾, 중재위원회의 구성, 중재규정의 제정, 중재인 명부 확정, 사무처와 중재사무처리기관 간의 역할분담, 기존 합의서상에서 준용해야 할 과제로 구분할 수 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중재규정의 제정이라고 본다.

(1) 법인격 있는 위원회의 설립⁴¹⁾

중재위의 성격(준사법적 기관) 기존에 체결된 세 개의 합의를 특별법으로 간주하여 민법상 비영리 사단법인보다는 특별법에 의한 특수법인으로 설립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법인설립을 위해 별도의 시행령 제정에 관한 문제를 검토할 필요가 있다. 우선 등기할 사항 등을 규정하는 대통령령을 제정하여 그에 따라 법인 설립등기 절차를 진행하면 될 것이다. 예를 들어, 민법법인 및 특수법인 등기처리규칙 상의 특수법인에 관한 사항을 준용하여 당해 특별법령이 정하는 사항에 따라 등기하면 될 것이다.

(2) 중재위원회 구성

2013.10.28. 남북협력지구발전기획단 사무실에서 개성공단 남북공동위원회 투자분과위원, 법무부, 대한상사중재원의 실무진이 만나 개성공단상사중재위원회 관련 회의를 개최하였다.⁴²⁾ 이 회의에서는 2013. 9. 11. 개성공단 남북공동위원회 제2차 회의결과 합의된 후속조치 사항인 3개월 내 위원회 구성, 6개월 내 중재인 명부 교환 및 중재규정의 마련 등에 관하여 논의하였다. 개성공단 상사중재위원회 설치와 관련한 후속조치는 북측과의 합의가 필요한 합의서 상의 후속조치와 이 후속조치와 관련하여 남측에서 독자적으로 해야 하는 별도의 후속조치로 구분할 수 있다.

40) 남한과 북한은 각각 법인격 있는 위원회를 설립하여야 한다.

41) 상사중재에 관한 남북합의서는 조약과 같은 법 효력을 지닌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세부사항에 관하여 하위 법령이 없기 때문에 남북상사중재위원회 운영에 관하여 특별법을 제정할 수도 있다.

42) 이 회의에는 개성공단 투자분과 위원인 기획재정부 남북경협과, 고용노동부 근로개선정책과, 산업통상자원부 해외투자과, 국장원, 통일부 남북경협과의 실무진과 상사중재와 관련하여 법무부와 대한상사중재원 실무진이 참석하였다.

제1안으로 법무부 법무실장(위원장), 통일부 경험과장, 산업자원통상부 남북 경험팀장, 한국중재학회 부회장, 대한상사중재원장으로 구성하는 방법과 제2안으로 법무부 통일법무과장(위원장), 통일부 제도개선팀장, 산업자원통상부 남북경협팀장, 한국중재학회 부회장, 대한상사중재원장으로 구성하지는 2개의 안이 상정되었다. 토의과정에서 실무자위주로 구성하자는 의견과 운영 초기의 안정성을 고려하여 정부주도로 구성하되 ADR제도의 전문성을 고려하여 민간의 전문가를 포함하는 구성하자는 의견이 상정되었다. 43) 남북상사중재위원회가 상위 기구인 점과 개성공단위원회는 개성공단에 국한된 점과 북측의 위원의 직급 등을 고려하여 중재실무 전문가 중심으로 구성하자는 의견이 반영되어 남측 위원회가 구성된 것으로 본다.44)

중재위원회의 기능은 첫째, 남북경제교류, 협력과 투자 과정에서 생기는 상사분쟁과 투자분쟁의 중재 또는 조정과 그와 관련한 사무처리45) 조항을 준용하면 가장 중요한 기능은 개성공단 내에서 발생하는 분쟁의 중재와 조정업무를 총괄하는 것이다. 둘째 개성공단에서 적용될 중재규정의 제정이다. 셋째, 중재인선정을 위한 개성공단 상사중재위원회 우리 측 중재인단을 구성하고 이를 북 측에 통보해야 한다.

(3) 중재인명부 확정

법무부, 산업통상자원부, 한국중재학회, 대한상사중재원 등의 추천을 받아 상사중재위원회가 중재인후보자 30명을 선정하였다.46) 북측과 분과위 등 회의 개최 시 우리 측 중재인의 전문성·자격 등을 소개할 필요성이 있다. 상사중재위원회 구성·운영에 관한 합의서는 법률 및 국제무역 투자실무에 정통한 자, 개성공단 및 기타 필요한 분야의 전문지식이 있는 자로만 규정되어 있다.

남측의 개성공단중재위원회는 상사분야와 행정노무 분야 각각 30명씩으로, 업종별로는 법조계 11명, 학계 14명 및 전문기관 4명 그리고 기업체 인사 1명으로 구성되어 있다. 우리 측은 북측에 이 명단을 통보했으나 북측에서는 아직 통보를 해오지 않고 있다. 우리 측은 북측과 중재규정의 제정 협상 이전에 중재인단과 중재위원회 위원들 간에 활발한 논의가 필요 할 것이다.

43) 남북상사중재위원회는 남측의 법무부 법무실장(위원장), 통일부 경험기획관, 산업자원부 남북산업자원총괄팀장, 한국중재학회 부회장, 대한상사중재원장 북측의 : 민경협 국장(위원장), 민경협 연구원 4명의 위원으로 구성되었다.(2006.7.4.)

44) 남측은 법무부, 통일부, 대한상사중재원, 한국개발연구회 소속 실무자와 국제중재분쟁 전문번호사로. 북측은 중앙지도개발총국, 조선국제무역중재위원회, 및 민경협 소속 실무자로 구성되어 있다.

45) 상사분쟁해결절차합의서 제3조 제1항 및 남북상사중재위원회 구성·운영합의서 제3조 1항

46) 2008년 남북상사중재위원회의 우리 측 중재인단은 통일부, 법무부, 산업자원통상부, 대한상사중재원, 한국중재학회의 추천을 받아 법조계 9명, 학계 8명, 실업계 8명과 경험지원기관 5명 총 30명의 중재인 명단을 확정 한 바 있다. 그리고 예비명단 30명도 추가로 지정하였다.

(4) 중재사무처리기관의 지정과 업무협조약정의 체결

남측의 중재사무처리기관으로 대한상사중재원이 지정되면 개성공단 남북공동위원회 사무처는 남북상사중재위원회 측과 그리고 남북 중 사무처리기관 측과 협의하여 필요한 업무를 수행해야 할 것이다. 2007년 5월 상사중재위원회 구성·운영 합의서 제10조에 따라 대한상사중재원을 중재사무처리기관으로 지정한 바 있으나 현재 기간이 만료되었다, 따라서 통일부는 재약정을 하고 필요한 예산을 지원해야하며, 중재사무처리기관으로 중재원이 지정되면 북측의 조선국제무역중재위원회와 아래와 같은 업무협조약정을 체결할 것을 제안한다. ① 남북간 상사분쟁을 신속·공정하게 처리함으로써 남북간 경제교류와 협력을 촉진하고 확대하기 위하여, 대한상사중재원과 조선국제무역촉진위원회는 앞으로 상거래에 종사하는 양측의 자연인 또는 법인들에 대하여 그들의 계약서에 다음과 같은 중재조항을 삽입할 것을 권장하기로 합의한다 ② 『이 계약으로부터, 이 계약과 관련하여 당사자간에 발생하는 모든 분쟁, 논쟁 또는 의견차이는 개성공단에서의 ‘남북상사분쟁해결절차 관련 합의서 및 부속 합의서’에 따라 중재로써 해결한다. 중재인이 내린 중재판정은 최종적인 것으로 당사자 쌍방에 대하여 구속력을 가진다』 이러한 계약서상의 중재조항의 삽입을 양 기관 간에 “개성공단에서의 남북 및 북남 상사중재약정” (가칭)을 통하여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을 것이다. 중재가 남측에서 행하여지게 되는 경우에는 대한상사중재원에서, 북측에서 행하여지게 되는 경우에는 조선국제무역촉진위원회의 조선무역중재위원회에서, 각각 남·북공동상사중재규정에 의거하여 중재절차를 진행한다.⁴⁷⁾ ④ 남북의 중재기관은, 상호간에 일방의 요청이 있는 경우, 중재절차 중 증언(증거)의 기록이나 기타 필요한 조치를 위한 행정적 업무를 포함한 시설을 제공기로 하며 그로 인하여 발생한 비용은 위 시설제공을 요청하는 기관이 부담하기로 한다. ⑤ 남북 중재기관은 상호관심사에 대하여 수시로 협의하며, 양측이 소장 또는 발간하는 정보자료 및 간행물을 교환하기로 한다. ⑥ 북 중재기관은 중재에 관한 각종 학술발표회의를 공동 개최하거나 연수프로그램에 상호 초청할 수 있다.

2. 기존 합의서상의 문제점과 과제

(1) 협의기간 및 북한법령의 국제적 부합성

합의서에는 “남북 사이의 경제교류·협력과정에서 생기는 상사분쟁은 당사자 사이에 협의의 방법으로 해결한다”고 하며, “협의의 방법으로 해결되지 않는 분쟁은 중재의 방법으로 해결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실효적인 분쟁해결을 위해 구체적인 기간을 정해야 할 것이다.

47) 서울과 평양의 지리적 근접성을 고려하여 개성 또는 파주 등에서 심리를 진행할 수도 있다.

중재판정부는 우선 “당사자들이 합의한 법령에 따라” 중재판정을 하고, “당사자가 합의한 법령이 없을 경우에는 남 또는 북의 관련법령, 국제법의 일반원칙, 국제무역거래관습에 따라” 중재판정을 한다고 하였다. 준거법 문제에서 발생하는 문제로써 법률의 중첩 및 흠결이 있다.⁴⁸⁾ 북한 법령이 흠결이 있거나 국제기준에 맞지 않을 가능성이 존재할 수 있기 때문에 북의 관련법령, 북한이 판단하는 국제법의 일반원칙 등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다.

(2) 상사의 개념

상사분쟁해결절차합의서가 실제 시행의 공정성과 신속성, 법적 구속력을 보장할 수 있도록 합의 내용과 조건을 보다 세분화, 명문화, 국제화해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 우선 분쟁 발생시 자의적 해석 우려가 있는 분쟁해결 규정들을 여타 관련법과 상충되지 않도록 다음과 같이 세분화·명문화해야 할 것이다. ① 상사분쟁에 있어 ‘상사’라는 개념에 대해 한국과 북한간 이견이 있을 수 있다. 현재의 합의서 및 관계 법률에는 상사분쟁과 비(非)상사분쟁에 관한 명확한 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다. ‘상사’에 대한 정의는 아직까지 명확하게 확립된 바 없으나, 1958년 외국중재판정의 승인 및 집행에 관한 유엔협약(일명 뉴욕협약)상에는 계약적 성질을 불문하고 관련 국가의 국내법상 상거래상의 것이라고 인정되는 법률관계로부터 발생하는 것을 의미한다. 사회주의 법체계인 북한과 한국 간의 상사에 대한 개념이 다를 수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한 명확한 정의가 필요하며, 장기적으로 상사에 대한 개념을 확장하여 분쟁의 대상으로 택해야 할 것이다.

(2) ICSID의 추가편의규칙 활용

남북 간의 투자분쟁해결과 관련하여 ICSID협약의 당사국이 아닌 국가를 일방으로 하고 타방을 개인투자자로 하는 분쟁과 관련해서 활용할 수 있는 ICSID의 추가편의규칙에 따른 중재를 제기하는 데 북한이 합의한 것으로 간주하는 규정을 마련하거나, 우리 기업과 북한당국 투자분쟁의 경우 남북상사중재위원회 이외에 중재절차의 지연 또는 중단 시 추가적으로 제3국 중재 또는 ICSID와 같은 국제기구에 의한 중재조항도 추가해 두는 것이 필요하다.

(3) 특별한 사정에 대한 해석

당사자가 중재판정에 따르는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불성실하게 이행할 경우 상대방 당사자는 관할지역의 재판기관에 그 집행을 신청할 수 있으며, 해당지역의 확정판결과 동일하게 집행하도록 하되, 특별한 사정은 중재위원회가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다(제3항). 그러나 ‘특별한 사정’의 의미는 상사분쟁해결절차합의서만으로 분명히 파악되지 않고 있어 ‘특별한 사정’의 해석을 둘러싸고 얼마든지 거부할 수 있는 여지가 남아 있다.⁴⁹⁾⁵⁰⁾

48) 신창섭, 국제사법, 세창출판사, 2011, pp.161-163.

(4) 중재판정의 집행력

관련 분쟁이 원활하게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중재판정으로 사건을 가져가는 단계를 지나 중재판정의 이행을 강제하는 방안이 강구되어야 할 것이다. 남북사이의 상사분쟁해결 절차에 관한 합의서 제16조는 중재판정의 이행, 승인 및 집행에 관해 서술하고 있으나, 이행하여야 한다는 추상적인 ‘의무’만 명시되어 있어 이행을 하지 않을 경우에 대비하여 이행의 집행력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의 마련이 필요하다.

3. 개성공단 중재규정 제정에 관한 과제

(1) 제정의 기본방향⁵¹⁾

남북은 2013년 9월 개성공단을 재가동하기로 하면서 법률전문가들로 상사중재위원회를 구성하여 개성공단에서의 분쟁을 중재절차를 통하여 해결하기로 합의하였다. 중재위원은 남측과 북측 각각 30인으로 하고 구체적 분쟁사건이 발생하면 이 중에서 선발되는 3인의 중재판정부에서 심리를 하도록 한 것이다. 사실 남북한은 이미 2000년 12월 ‘남북 사이의 상사분쟁 해결절차에 관한 합의서’와 2003년 10월 ‘남북상사중재위원회 구성·운영에 관한 합의서’를 채택하였으나 실제로 중재절차가 개시된 적은 없었다.

우리 법무부가 작업한 남측의 개성공단 남북상사중재위원회 중재규정(안)은 총 7장 67개의 조문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는 종전의 남북상사중재규정의 내용과 거의 비슷한 형태를 보이고 있다. 종전 법무부의 안은 67개의 조문이었고 통일부가 만든 대안은 68개 조문이었다.⁵²⁾ 이하 법무부의 개성공단 중재규정(안) 중 주요한 부분에 대해 살펴보기로 한다.

49) 박덕영 외 13인, 국제투자법, 박영사, 2012, pp.327-349.
 50) ‘특별한 사정’이 불필요하게 확대 해석되지 않도록 거짓된 증거로 유리한 중재판정을 얻어내거나 중재절차와 관련해서 사기행위가 있는 경우와 같이 명백한 경우를 한정적으로 열거하여 규정할 필요가 있다.
 51) 중재규정의 제정은 2007년 9월 마련한 중재규정 초안을 토대로 (법무부, 통일부, 대한상사중재원 등이 협의한 우리측 중재규정(안) 마련하여 북측과 협의를 진행하고 있다.
 52) 제1장 총칙에는 8개의 조문(목적, 정의, 중재사무처리기관, 기간, 통지, 제출서류의 부수, 언어, 책임의 면제), 제2장 중재의 개시에는 13개의 조문(중재합의의 방식, 중재합의의 효력, 중재신청, 중재신청의 접수, 중재신청의 통지, 답변, 반대신청, 중재판정부에 의한 반대신청의 요구, 신청의 변경 또는 보완, 중재신청의 철회, 중재지, 중재판정의 준거법, 조정에 의한 분쟁해결), 제3장 중재판정부에는 11개의 조문(당사자에 의한 중재판정부 구성, 중재위원회에 의한 판정부 구성, 중재인 선정통지, 중재서류 송부, 중재인의 부적격 고지, 중재인에 대한 기피절차, 중재인의 직무불이행으로 인한 권한 종료, 중재인의 보궐, 중재판정부의 권한 범위에 대한 이의신청, 중재위원회의 결정), 제4장 중재심리절차에는 20개의 조문(당사자에 대한 동등한 대우, 중재절차의 합의, 비공개, 비밀유지의무, 중재의 대리, 일시와 장소, 심리에의 출석, 심리절차, 통역 또는 번역, 당사자의 해태, 심리의 연기 또는 속행, 중재판정부의 의사결정, 증거조사, 서면제출, 감정인, 임시적 처분, 서면심리, 심리의 종결, 심리의 재개, 이의신청권의 상실, 기한의 연장), 제5장 중재판정에는 8개의 조문(중재판정 시한, 중재판정의 형식과 내용, 중재판정의 범위, 화해중재판정, 중재절차의 종료, 중재판정문 송부, 중재판정의 정정·해석 및 추가판정, 규정의 해석), 제6장 중재판정의 불복·집행에는 3개의 조문(중재판정에 대한 불복, 중재판정의 이행, 중재판정의 승인과 집행)을 그리고 마지막 제7장 중재비용에는 5개의 조문(중재비용, 요금, 경비, 수당, 예납방법 등)을 두고 있다.

(2) 중재규정의 주요 조항⁵³⁾

1) 총칙

(가) 목적

이 규정은 개성공단 남북상사중재위원회가 남북 사이의 투자보장에 관한 합의서, 남북 사이의 상사분쟁 해결절차에 관한 합의서, 남북상사중재위원회 구성·운영에 관한 합의서 및 개성공단에서의 “남북상사중재위원회 구성·운영에 관한 합의서” 이행을 위한 부속합의서에 따라 개성공단과 관련된 분쟁을 중재에 의하여 해결하기 위한 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합의서 기본정신에 따른 기본방향을 목적으로 둔 것으로 보인다.

(나) 정의

① ‘중재’라 함은 분쟁해결합의서 제8조 제1호⁵⁴⁾ 및 제2호⁵⁵⁾에 규정된 분쟁을 분쟁해결 합의서, 중재위원회합의서 및 이 규정에 따라 법원의 재판에 의하지 아니하고 중재인의 판정에 의하여 해결하는 절차를 말한다. ② ‘중재합의’라 함은 계약상의 분쟁인지 여부에 관계없이 일정한 법률관계에 관하여 당사자 간에 이미 발생하였거나 장래 발생할 수 있는 분쟁의 전부 또는 일부를 중재에 의하여 해결하도록 하는 당사자 간의 합의를 말한다. ③ ‘중재판정부’라 함은 분쟁해결합의서 제10조⁵⁶⁾ 및 이 규정에 따라 선정된 3인의 중재인으로 구성되어 중재절차를 진행하고 중재판정을 내리는 중재인단을 말한다. ④ ‘당사자’란 중재위원회에 중재를 신청한 신청인 또는 그 신청의 상대방이 되는 피신청인을 말한다. 복수의 신청인 및 복수의 피신청인은 중재인의 선임에 대해서는 각 1명의 당사자로 간주한다. 이 내용은 우리 중재법 상의 저의와 대동소이하다.

(다) 중재사무처리기관의 지정 및 업무협조 약정

① 남과 북은 남측 상사중재위원회의 중재사무처리기관으로 대한상사중재원을, 북측 상사중재위원회의 중재사무처리기관으로 조선국제무역중재위원회를 각 지정한다. ② 중재사무처리기관은 다음의 기능⁵⁷⁾을 수행한다. 법무부(안)에는 기관 지정에 관한 내용만 있다. 사무처리기관 간의 업무협조약정에 관한 근거 규정이 필요하다.

53) 김갑유, 중재실무강의, 박영사, 2012(중재에 관한 法源으로 중재법, 중재규칙, 국제번호사회 제반규칙, 유엔 표준중재법과 뉴욕협약을 들고 있다. 개성공단에서의 중재 法源은 중재규정이 가장 중요하다고 본다.

54) 상사분쟁 중 중재위원회에서 중재기로 합의한 사건

55) 남북사이의 투자분쟁 사건(위의 상사분쟁과 달리 중재신청의 전제조건으로 중재합의를 요구하지 않음.

56) 중재인 선정에 관한 방법, 당사자에 의한 3인 중재판정부 구성이 원칙, 결렬된 경우 양측의 중재위원장이 개입하고 의장중재인을 선임하지 못할 경우 ICSID의 협조에 따라 선정한다.

57) 제1호에서 제호까지 그 기능을 규정하고 있다. 1. 중재위원회로부터 접수한 쌍방의 중재인 명부 및 중재인 자격설명서의 보존, 비치 2. 중재판정문의 보존, 비치 및 인증등본의 발급, 3. 중재신청서, 답변서, 입증자료 등 기타 당사자들이 중재 또는 조정을 위하여 제출하는 모든 서류의 접수, 통지 4. 기타 자기 측 중재위원회 위원장이 위원회의 운영 및 중재절차 진행과 관련하여 지정하는 업무

2) 중재의 방식

(가) 중재합의의 방식

① 중재합의는 독립된 합의 또는 계약 중 중재조항의 형식으로 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중재합의는 서면⁵⁸⁾으로 하여야 한다.

(나) 중재합의의 효력

① 이 규정에 의하여 중재를 신청하는 경우, 당사자사이에 다른 합의가 없는 한 중재절차의 개시일 현재 시행 중인 규정을 적용한다. ② 당사자 일방이 중재합의의 존재, 유효성, 범위 등에 관하여 항변을 제기한 경우, 중재판정부는 중재합의가 유효함이 인정되는 경우 중재를 계속 진행시킬 수 있다. ③ 당사자간의 계약에서 중재합의 이외의 계약조항이 무효, 취소기타 사유에 의해 그 효력이 인정되지 않더라도, 중재판정부는 중재를 진행하고 판정할 수 있다.

(다) 중재신청

① 중재를 신청하려는 자는 자기 측 중재사무처리기관에 중재비용⁵⁹⁾을 예납하고, 다음의 서류⁶⁰⁾를 제출하여야 한다.

(라) 답변

① 피신청인은 중재신청의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그 통지를 발송한 자기 측 중재사무처리기관에 다음의 서류를 제출하여 답변할 수 있다. 1. 답변서⁶¹⁾ 2. 답변의 이유를 입증할 수 있는 서류 등 기타 서류 3. 대리인이 답변하는 경우 위임장

(마) 중재지

① 중재지는 당사자들이 협의하여 정한다. 그러나 중재판정부가 구성된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중재지에 관한 합의가 없는 경우에는 중재판정부가 당사자의 편의 등을 포함한 당

58) 제 ③항에서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서면에 의한 중재합의로 본다. 1. 당사자들이 서명 또는 날인한 문서에 중재합의가 포함되어 있는 경우 2. 서신, 전보, 진신, 모사전송(팩스), 텔렉스 기타 통신수단에 의하여 교환된 문서에 중재합의가 포함되어 있는 경우 3. 일방 당사자가 당사자 사이에 교환된 문서의 내용에 중재합의가 있는 것을 주장하고 상대방 당사자가 이를 다투지 아니하는 경우 그리고 제 ④항에서 계약이 중재조항을 포함한 문서를 인용하고 있는 경우에는 중재합의가 있는 것으로 본다. 다만, 그 계약이 서면으로 작성되고 중재조항을 그 계약의 일부로 하고 있는 경우에 한한다.

59) 미 달러로 예납하여야 하며 예납이 되지 않을 경우 절차를 종료할 수 있다.

60) 중재신청서(신청자와 피신청자의 인적사항, 대리인 인적사항, 신청취지와 신청의 이유와 입증 방법을 기재해야 한다), 중재합의를 입증할 수 있는 서면, 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 위임장이 필요할 수 있다.

61) 제② 항에 따라 답변서에는 다음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1. 피신청인과 상대방의 성명, 주소 및 연락처 (법인인 경우 대표자의 성명 및 주소 병기) 2. 대리인이 있는 경우 그 성명, 주소 및 연락처 3. 답변의 취지 4. 답변의 이유와 입증방법

해사건에 대한 제반사정을 고려하여 정한다. ② 당사자 간에 다른 합의가 없는 경우에 중재판정부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중재지 외의 적절한 장소에서 중재인들 간의 협의, 증인, 감정인 및 당사자 본인에 대한 신문, 물건, 장소의 검증 또는 문서의 열람을 할 수 있다. 협의가 잘 되지 않는 점을 감안하여 훈시조항이나 개성, 파주, 서울, 평양 등의 장소를 예시할 수 있다.

(바) 중재판정의 준거법

① 중재판정부는 당사자들이 합의한 법령에 따라 중재판정을 하여야 한다. 특정국가의 법 또는 법체계를 지정한 경우에 달리 명시되지 아니하는 한 그 국가의 국제사법이 아닌 분쟁의 실체에 적용될 법을 지정한 것으로 본다. ② 제1항의 당사자간의 합의가 없는 경우에 중재판정부는 분쟁의 대상과 가장 밀접한 관련이 있는 남 또는 북의 관련 법령이나 국제법의 일반원칙을 적용하되, 해당 거래에 적용될 수 있는 국제무역거래관습을 고려하여야 한다. 북한법령이 준거법으로 지정될 것에 대비, 장기적으로는 우리 측은 북한이 중재에 관한 뉴욕협약과 워싱턴협약에 가입토록 유도·지원을 해야 한다. 뉴욕협약도 다윈의 진화설 이론에 따라 개정에 대해 논의가 되고 있지만 아직은 국제상사중재에 관한 가장 근본적인 가치로 판단되고 있다.⁶²⁾

(사) 조정에 의한 분쟁해결

① 당사자 쌍방으로부터 조정의 요청이 있을 경우, 중재위원회는 조정절차를 개시한다. ② 당사자는 합의에 의하여 조정인 1명 또는 3명을 선정하며 조정인이 조정절차와 방법을 정한다. 당사자 쌍방으로부터 조정요청이 있는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조정인을 선정하지 못한 경우 조정절차는 종료되고 중재절차가 다시 진행된다. 다만, 당사자는 합의에 의하여 위 기간을 10일간 연장할 수 있다. 개성공단에서의 분쟁해결은 조정에 의한 해결이 앞선과 함께 효율적일 수 있을 것이다.⁶³⁾

3) 중재판정부

(가) 당사자에 의한 중재판정부 구성

① 중재판정부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따라 선정되는 중재인 3명으로 구성한다. ② 당사자는 중재신청이 접수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중재인의 선정에 대해 합의를 하지 못한 경우, 중재신청이 접수된 날로부터 40일 이내에 중재인명부에서 각각 1명의 중재인을 선정하며, 선정된 2명의 중재인이 협의하여 중재신청이 접수된 날로부터 50일 이내에 중재인 명부에서 의장중재인 1명을 선정한다.

62) Shen Wei, "Relating the New York Convention,, Intersentia, 2013

63) Joshua Karton I, "The Culture of International Arbitration and the Evolution of Contract Law", Oxford University Press, 2013

(나) 중재위원회에 의한 중재판정부 구성

① 일방 당사자가 중재인을 선정하지 못한 경우에는 일방 당사자의 요청에 따라 일방의 중재위원회의 위원장이 그 요청을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중재인을 중재인 명부에서 선정한다. ② 선정된 2명의 중재인이 의장중재인을 선정하지 못한 경우에는 일방 당사자의 요청에 따라 쌍방의 중재위원회 위원장이 협의하여, 그 요청을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의장중재인을 중재인 명부에서 선정한다. 이 경우 쌍방의 중재위원회 위원장은 각자 의장중재인 후보 1명을 추천하여 추천의 방법으로도 의장중재인을 선정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의하여 의장중재인을 선정하지 못한 경우 일방 중재위원회 위원장은 국제투자분쟁해결센터(ICSID, International Center for Settlement of Investment Disputes) 사무국장에게 의장중재인 선정을 의뢰할 수 있다. 이를 위해 국제투자분쟁해결센터와의 업무협조약정이 요구된다.

4) 중재심리절차

(가) 비공개, 비밀유지의무

① 중재절차는 공개하지 아니한다. 다만 당사자 사이에 합의가 있는 경우에는 공개할 수 있다. ② 중재인, 중재판정부 서기, 중재사무처리기관 직원, 중재위원회 위원장 및 위원, 중재위원회 위원장 보좌인원, 중재위원회 서기, 당사자, 대리인은 중재사건 처리 중 알게 된 사실을 누설하여서는 아니된다.

(나) 중재의 대리

① 당사자는 변호사 또는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자로 하여금 이 규정에 의한 절차에 관하여 대리를 하게 할 수 있다. ② 대리인의 권한은 서면으로 증명되어야 한다.

(다) 심리에의 출석

① 중재절차의 당사자와 그 대리인은 심리에 출석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규정된 이외의 자로서 중재판정결과에 이해관계가 있는 자는 중재판정부에 이해관계가 있음을 소명하고 중재판정부의 허가를 얻어 심리에 출석할 수 있다. ③ 당사자의 일방이 정당하게 통지 또는 고지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심리기일에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출석하여도 심리에 응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중재판정부는 중재절차를 계속 진행하여 제출된 증거를 기초로 중재판정을 할 수 있다.

(라) 중재판정부의 의사결정

당사자 사이에 다른 합의가 없는 경우에 중재판정부의 의사결정은 과반수 결의에 의한다.

다만, 당사자 간의 합의 또는 중재인 전원의 위임이 있으면 의장중재인이 중재절차의 진행을 단독으로 결정할 수 있다.

5) 중재판정

(가) 중재판정시한

① 중재판정은 중재신청이 접수된 날로부터 6개월 이내에 하여야 한다. 필요한 경우 중재판정부는 당사자들과 협의하여 그 기간을 3개월까지 연장할 수 있다. ② 제21조에 의한 조정신청으로 중재절차가 중지된 기간은 제1항의 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나) 중재판정의 형식과 내용

① 중재판정은 서면으로 2부를 작성하여야 하며, 중재인 전원이 서명, 날인한 서면으로 작성하여야 한다. 중재인 1인이 서명을 거부하거나 서명할 수 없는 사유가 있는 때에는 나머지 중재인 2인이 그 사유를 기재하고 서명, 날인하여야 한다. ② 중재판정에 다음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⁶⁴⁾

(다) 화해중재판정

① 중재절차의 진행 중에 당사자들이 화해에 이른 경우에 중재판정부는 그 절차를 종료한다. ② 화해중재판정은 당해 사건의 본안에 관한 중재판정과 동일한 효력을 가진다.

(라) 중재절차의 종료

① 중재절차는 중재판정에 의하거나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중재판정부의 결정에 의하여 종료된다. ② 중재판정부는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중재절차의 종료 결정을 하여야 한다. ⁶⁵⁾

(마) 중재판정문 송부

① 중재판정부는 각 중재사무처리기관에 중재판정문 원본 1부와 당사자 수만큼의 정본을 송부한다. ② 각 중재사무처리기관은 중재판정부로부터 중재판정문 원본과 정본을 송

64) 1. 당사자의 성명 또는 명칭, 주소, 대리인이 있는 경우 그 대리인의 성명과 주소 2. 중재판정 주문 및 이유 3. 준거법 4. 작성년월일 및 중재지 ③ 중재판정 이유는 중재심리에서 확인된 사실과 증거, 중재판정 주문이 정당하다는 것을 인정할 수 있을 정도로 당사자의 주장, 그 밖의 공격·방어방법에 관한 판단 등을 기재한다. 다만 당사자 간에 합의가 있거나 제55조의 규정에 의한 화해중재판정인 경우에는 중재판정문에 중재판정 이유를 기재하지 아니한다. ④ 중재판정은 중재판정문에 기재된 일자와 장소에서 내려진 것으로 본다.

65) 1. 신청인이 중재신청을 철회하는 경우. 다만, 피신청인이 이에 동의하지 아니하고 중재판정부가 피신청인에게 분쟁의 최종적 해결을 구할 정당한 이익이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당사자가 중재절차의 종료에 합의하는 경우 3. 중재판정부가 중재절차를 속행하는 것이 불필요하거나 불가능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③ 중재판정부의 권한은 제58조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중재절차의 종료와 동시에 종결된다.

부 받은 즉시, 중재판정문 원본은 보관하고 그 정본은 당사자 또는 그 대리인에게 송부한다. 다만, 중재비용이 완납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당사자에게 중재판정 사실만을 통지한다.
 ③ 각 중재사무처리기관은 자기 측 중재위원회 위원장이 인증한 중재판정문의 추가사본을 당사자에게 발급할 수 있다.

6) 중재판정의 불복·집행

(가) 중재판정에 대한 불복

① 중재판정에 대한 불복은 중재위원회에 제기하는 중재판정 취소신청에 의하여만 할 수 있다. ② 당사자는 중재판정문을 받은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자기 측 중재사무처리기관에 중재판정 취소신청서를 제출하여 중재위원회에 중재판정 취소신청을 할 수 있다. ③ 중재위원회는 중재판정 취소를 구하는 당사자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사정이 있었음을 입증하는 경우 중재판정을 취소할 수 있다.⁶⁶⁾ ④ 중재위원회가 중재판정취소신청을 심의하였으나 중재판정 취소신청서 접수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쌍방 중재위원회의 합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경우 그 신청은 기각된 것으로 본다. 심의기간은 당사자의 신청이 있을 경우 위원회에서 쌍방 중재위원회의 합의로 3개월간 더 연장할 수 있다.

(나) 중재판정의 이행

당사자는 중재판정이 중재위원회에 의하여 취소되지 아니하는 한, 중재판정에 따르는 의무를 지체 없이 이행하여야 한다.

(다) 중재판정의 승인과 집행

① 중재판정의 승인 또는 집행을 신청하는 당사자는 다음 각 호의 서류⁶⁷⁾를 관할지역 재판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중재판정 또는 중재합의가 외국어로 작성되어 있는 경우에는 정당하게 인증된 한국어의 번역본을 첨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신청을 받은 재판기관은 중재위원회가 중재판정을 취소하지 아니하는 한 중재판정을 구속력이 있는 것으로 인정하고 확정판결과 동일하게 집행하여야 한다. ③ 제1항의 신청을 받은 재판기관은 당사자가 중재위원회에 중재판정의 취소를 신청한 경우에는 중재위원회가 취소신청에 대

66) 1. 중재합의의 당사자가 그 준거법에 의하여 중재합의 당시 무능력자인 사실 2. 중재합의가 당사자들이 지정한 준거법 또는 준거법 지정이 없는 경우 중재판정을 집행하여야 할 남측 또는 북측의 법령에 의하여 무효인 경우 3. 중재판정의 취소를 신청한 당사자가 중재인의 선정 또는 중재절차에 관하여 적절한 통지를 받지 못하였거나 기타의 사유로 인하여 본안에 대한 변론을 할 수 없었던 사실 4. 중재판정이 중재합의의 대상이 아닌 분쟁을 다룬 사실, 또는 중재판정이 중재합의의 범위를 벗어난 사항을 다룬 사실. 다만, 중재판정이 중재판정의 대상에 관한 부분과 대상이 아닌 부분으로 분리될 수 있는 경우에는 대상이 아닌 중재판정부분만을 취소할 수 있다. 5. 중재판정부의 구성 또는 중재절차가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따르지 아니하였거나 그러한 합의가 없는 경우에는 이 규정에 따르지 아니하였다는 사실

67) 1. 중재판정의 정본 또는 정당하게 인증된 등본 2. 중재합의의 원본 또는 정당하게 인증된 등본

한 결정을 할 때까지 중재판정의 집행을 연기할 수 있다. 이 경우 중재판정의 집행을 신청한 당사자의 요구에 의하여 상대방에게 적당한 담보의 제공을 요구할 수 있다.

V. 결 론

개성공단 내에서 우리 기업이 겪고 있는 애로사항은 임금인상, 인력배치 등의 노동분쟁, 세금, 보험 분쟁 및 교역과 투자에 관한 분쟁이 주류를 이루고 있다.⁶⁸⁾ 그리고 2013년 9월 11일 개성공단 남북공동위원회(북안공동위원회) 양측 위원장이 개성공단에서의 “남북상사중재위원회 구성. 운영에 관한 합의서”이행을 위한 부속합의서를 서명하고 그 문본을 교환함으로써 발효 되었다. 따라서 개성공단에서의 상사분쟁과 투자분쟁은 남북상사중재위원회가 가동되기 이전까지 개성공단 상사중재위원회가 해결토록 되어 있다.

개성공단에서의 남북상사중재제도가 정착되기 위해서는 개성공단 상사중재위원회가 정상적으로 가동이 되어야 한다. 그 선결과제로는 개성공단 관련 부속합의서가 준용하고 있는 기존 남북합의서의 기본원칙을 따라야 한다. 그리고 부속합의서에 규정된 후속조치를 북측과 합의하여 조속히 시행해야 한다. 그 후속조치로는 독자적인 법인격 있는 위원회를 조직해야 한다. 위원회의 활동에 필요한 업무를 위해 중재사무처리기관을 지정하고 중재사무처리기관은 개성공단 남북공동위원회 사무처와 협의하여 업무 역할을 구분하여야 할 것이다. 그리고 남측 위원회는 조속히 북측과 중재인명부를 교환해야 할 것이다. 아울러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중재규정 마련을 위해 남북 양 측이 초안을 조속한 시일 내에 마련해야 할 것이다.

개성공단에서의 상사중재위원회가 정상적으로 가동하기 위해서는 부속합의서 후속조치로서의 실천과제를 잘 설정하여 수행해야 할 것이다. 첫째 법인격 있는 위원회가 특수법인 또는 비영리법인으로 설립을 하여야 한다. 둘째 중재사무처리기관으로 남측은 대한상사중재원, 북측은 조선국제무역중재위원회가 지정되어야 할 것이며 양 기관은 업무협조약정을 체결할 필요성이 있다. 아울러 통일부는 대한상사중재원과의 업무협조약정을 다시 체결하고 사무처리기관 활동을 위한 예산을 확보하여 지원해야 할 것이다. 셋째 양 측은 중재인명부를 교환해야 한다. 남측은 이미 30명의 중재인 명단을 확정하여 북측에 전달했지만 북측은 아직 이행치 않고 있다. 넷째 중재규정을 상호 교환하여 검토 후 공동 중재규정을 마련해야 한다. 중재규정의 제정 시 유엔의 표준중재법, 한국중재법, 북한의 대외경제중재법 및 남북 중재사무처리기관의 중재규칙 등의 주요 내용이 반영되어야 할 것이다.

68) 최근 통일부와 한국무역협회가 조사한 바에 의하면 대북교역업자의 가장 큰 애로사항은 남북교역에서 클레임 해결 수단이 없다는 것이었다(클레임 해결수단 부재: 15.8%, 품질하자: 13.3% 등).

한국은 현재 법무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중재법 개정의 기본방향을 염두에 두고 중재규정작업을 해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 남북 양 측은 중재 전문 실무자들의 국제세미나의 개최와 동북아국제중재회의 혹은 중재에 관한 국제세미나 등에서 69)에서 남북상사중재를 발표할 수도 있다. 그리고 개성공단에서의 분쟁해결을 위한 부속합의서 이행사항은 남북상사중재위원회가 가동되기 이전까지 한시적인 조치이기 때문에 원래의 합의서 후속조치인 잊지 말고 추진해야 할 것이다.

참고문헌

- 권재열 외, 「북한의 법체계」, 집문당, 2004.
- 김광수 외, 「개성공단 상사분쟁해결에 관한 연구」, 통일부, 2010.
- 김갑유, 「중재실무 강의」, 박영사, 2012.
- 문준조 외, 「중국 진출기업의 분쟁사례와 법적용에 관한 연구」, 2013.
- 박덕영 외, 「국제투자법」, 박영사, 2012.
- 박정동, 「중국과 북한의 비교 개발경제론」, 서울대학교출판사, 2003.
- 법무부, 「개성공단에서의 상사중재위원회 중재규정(안)」, 2014.
- 손경원, 「국제무역분쟁해결제도, 사회과학출판사(평양)」, 2004.
- 신의택, 「국제투자분쟁에서의 UNCITRAL 중재규칙 활용 실무」, 법무부, 2013.
- 신창섭, 「국제사법」, 세광출판사, 2011.
- 이효원, 「남북교류협력의 규범체계」, 경인문화사, 2006.
- 제성호, 「남북경제교류의 법적문제」, 집문당, 2003.
- 현대경제연구원, 「현안과 과제」, 남북전문가 설문보고서, 2014.
- 김광수, “남북상사중재 제도의 정착방안에 관한 연구”, 중앙대학교 무역학과 박사학위논문, 2007.
- _____, “남북상사중재 제도 활성화를 위한 남북협력방안”, 「중재연구」 제21권, 한국중재학회, 2013.
- _____, “UNCITRAL 중재규칙에 따른 KCAB 중재관리규칙 활용 방안에 관한 연구”, 중재 제339호, 대한상사중재원, 2013.
- 김상호, “남북상사중재기구의 운영과 실행과제”, 「중재연구」 제18호, 한국중재학회, 2008.
- 김용익, “북한의 투자유치와 분쟁해결에 관한 연구”, 목원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2013.

69) 회원국은 한국, 중국, 러시아, 일본 몽골, 북한, 키르기스스탄, 카자흐스탄이며 지난해는 중국 북경에서 개최되었다.

- 박덕영, 강승관, “개성공단 투자보호와 분쟁해결제도의 개선방안에 관한 고찰”, 통상법률 제92호, 법무부, 2010.
- 법무부, “국제중재서비스 산업 육성”, 국제법무자문위원회 간담회 및 제5차 회의 참고자료, 법무부, 2013.
- 이영신, “남북한간 상사중재판정의 승인과 집행에 관한 연구-중국 중재사례의 적용을 중심으로”, 제주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13.
- 이주원, “개성공단 법제 인프라 구축 방안 중 개성공단에서의 남북 상사분쟁 해결방안”, 2006 북한법 및 남북관계법 학술회의 발표논문집, 2006.
- 이주원·신군재, “개성공단에서의 분쟁해결을 위한 중재규칙의 제정방향”, 국제상학 제22권 제3호, 2007.
- 임성택, “개성공업지구의 분쟁해결을 위한 사법제도”, 통상과 법률 6호, 법무부, 2011.
- 조봉현, “남북 경제교류와 통일”, 송실평화통일연구원 개원기념학술회의, 송실대학교, 2014.
- 최석범 외, “남북한 상사중재위원회 운영상의 문제점과 활성화 방안”, 중재연구 제17호, 한국중재학회, 2007.
- 조선일보(2014)
- 한국중재법, 2002
- Arthur W. Rovinel, “Contemporary Issues In International Arbitration and Mediation”, *IMartinus NIJHOFF Publishers*, Fordham Law School, 2012.
- Brace E. Bechtol, “The Implications of Cheonam Sinking: A Security Studies Perspective”, *International Journal of Korean Unification Studies*, Korea Institute National Unification, 2010.
- Dennis Deng, “China”, *Dispute Resolution*, Review, 2010.
- Felix, Hess and Siew Lin Mok, “China”, *the International Arbitration Review*, 2010.
- Getting the Deal Through, “Dispute Resolution in 47 Jurisdictions Worldwide”. 2011.
- Global Arbitration Review, “Arbitration in 55 Jurisdictions Worldwide”. 2011.
- ICC, “Guide to Export-Import Basics”, 2008.
- Ingencerg Schwenzen and Claudia Marti Whitebread, “Legal Answer to Globalization”, *Current Issues in the cisp and arbitration(Volume 15)*, Eleven Internationa Publishing, 2014.
- Jack. J., *International Commercial Arbitration*.
- Jan Paulsson, *The Idea of Arbitration*, Oxford, 2013.
- J. William Breslin and Jeffrey, “Negotiation Theory and Practice”, Harvard Law School, 2010.

- Joshua Karton 1, “The Culture of International Arbitration and the Evolution of Contract Law”, Oxford University Press, 2013.
- JurisNet,LLC, “The Baker & McKenzie International Arbitration Yearbook(2010-2011)”, 2011.
- Kap-You(Kebin)Kim, *Arbitration Law of Practice and Procedure*, Bae, Kim & Lee LLC, 2012.
- Kwang-Soo Kim, *ADR & International Commercial Arbitration*, Bomyung Books, 2012.
- Kwang-Soo Kim, *International Commerce*, Bomyung Books, 2014.
- Leo Kanowiz, “Cases and Materials on Alternative Dispute Resolution”, West Publishing Co., 1985.
- Margertet L. Mosesl, “The Principles and Practice of International Commercial Arbitration (Second Edition)”, Oxford, 2012.
- Michael L. Moffitt and Robert C. Bordone, “The Hand Book of Dispute Resolution”, Harvard Law School, 2005.
- Robert H. Mnookin, “Beyond Winning”, The Belknap Press of Harvard University Press, 2000.
- Shen Wei, *Relating the New York Convention*, Intersentia, 2013.
- Sriram Panchu, *Mediation Practice & Law*, LexisNexis 2011.
- Tony Cole, *The Structure of Investment Arbitration(Volume 12)*, Eleven International Publishing, 2014.

ABSTRACT

A Study on the Organization and Operation of the Inter-Korean Commercial Arbitration Committee in Gaeseong Complex

Kwang-Soo Kim

As all aspects of international activity have kept growing in good transaction, transnational investments, joint ventures, and the licensing of intellectual property, it is inevitable for disputes to increase across national frontiers. International disputes can be settled by arbitration and ADR. In the situation presented in the paper, any dispute shall be finalized by arbitration and conciliation in the Gaeseong Industrial Complex.

Inter-Korean Commercial Arbitration in the Gaeseong Industrial Complex has become the principal method of resolving disputes in trade, commerce, and investment in accordance with the “Agreement on South-North Commercial Dispute Settlement Procedures,” “Agreement on Organization and Operation of Inter-Korean Commercial Arbitration Committee,” and the Annexed Agreement on “Organization and Operation of Inter-Korean Commercial Arbitration Committee” (2013). But the follow-up measures of the said agreements have not been fulfilled. Some prerequisite measures of the Inter-Korean commercial arbitration must be satisfied.

In order to proceed with arbitration and conciliation in the Gaeseong Industrial Complex, we need to ask the following: Does the status of an arbitrational matter? Should an agreement to arbitrate contain a choice of law clause? Should one provide for one arbitrator or three? How should the arbitrators be selected? What is the relation between party-appointed arbitrators and the presiding arbitrator (neutral arbitrator)? Do arbitrators compromise more than the litigation? Can conciliation be combined with arbitration?

To execute the enactment of arbitration regulations, the contents of the Arbitration Rules of the Korean Commercial Arbitration Board (South) and the Korea International Trade Arbitration Committee (North), together with the Korean Arbitration Act and External Arbitration Act of North Korea and the UNCITRAL Model Arbitration Law and UNCITRAL 1 Arbitration Rules are reflected in the Rules. There are many aspects of the Inter-Korean Commercial Arbitration. It is essential to understand key elements; namely, the arbitration agreement, appointment of arbitrator, arbitral proceeding and arbitral award,

and enforcement and setting aside of arbitral award.

This research deals with five chapters. Chapter 1 provides the introduction. Chapter 2 deals with trade volume between South and North Korea and the kinds of dispute in Gaeseong. Chapter 3 addresses contents and follow-up measures of the agreement on the “South-North Commercial Dispute Settlement Procedures,” “Agreement on Organization and Operation of Inter-Korean Commercial Arbitration Committee,” and the Annexed Agreement on “Organization and Operation of Inter-Korean Commercial Arbitration Committee” (2013). Chapter 4 features the problems and tasks of the pertinent agreements. Chapter 5 gives the conclusion.

Enabling parties to find an amicable solution to the dispute in the Gaeseong Industrial Complex can lead to a useful and appropriate framework either through direct negotiation or by resorting to conciliation or mediation in accordance with pertinent agreements and follow-up measures contained in the agreements.

Key Words : South-North Commercial Arbitration, Agreement on South-North Commercial Dispute Settlement Procedures, Agreement on Organization and Operation of Inter-Korean Commercial Arbitration Committee, Inter-Korean Commercial Arbitration Committee, Arbitration Administrative Agency, Panel of Arbitrations, Arbitration Regulations